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0
------	------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1명)

찬 성 자 : 도병두, 이인식의원

1. 제안이유

임원의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신설).
- 나. 재정 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다.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라. 다른 법령의 준용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2. 11. 00 ~ 11. 00.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8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외부감사) ① 회사는 매년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u> <u>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 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u></p>
<p><u>제8조(재정 지원) (생략)</u></p> <p><신 설></p>	<p><u>제9조(재정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u></p>
<p><u>제9조 ~ 제11조 (생략)</u></p> <p><신 설></p>	<p><u>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u> <u>제13조(외부감사) ① 회사는 매년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제12조 · 제13조 (생략)

<신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 을 준용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59호, 2019. 10.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에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059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